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sup>4</sup> G06F 15/30	(11) 공개번호 특1991-0001577	(43) 공개일자 1991년01월31일
(21) 출원번호	특1990-0008823	
(22) 출원일자	1990년06월 15일	
(30) 우선권주장	1-152340 1989년06월 16일 일본(JP)	
(71) 출원인	가부시끼가이샤 히다찌세이사쿠쇼 미다 가쓰시게	
(72) 발명자	일본국 도쿄도 지요다구 간다 스루가다이 4-6 히로야 마사아끼	
	일본국 가나가와켄 가와사끼시 아사오쿠 오젠지 1170 히다찌오젠지료	
	야마다 게이이찌	
	일본국 가나가와켄 가와사끼시 사이와이쿠 오구라 462 히다찌가시마다료	
	311	
	야마시타 고타로	
	일본국 도쿄도 마찌다시 오쿠라쵸 526-1	
(74) 대리인	백남기	

심사청구 : 없음

(54) 거래 처리 시스템 및 방법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거래 처리 시스템 및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도는 본 발명의 시스템을 구성을 나타내는 개략적인 도면,

제 2도는 본 발명의 거래처리 장치의구성도,

제 3도는 본 발명의 이동 명령 입력장치의 구성도.

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 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거래처리 장치가 설치되는 장소의 배치를 결정하도록 이동해야할 상기 거래처리장치의 이동경로를 결정하는 프로세서와 조립된 상기 거래처리 장치를 이동시키는 이동수단, 상기 프로세서에서 상기 이동경로를 구하는 수단, 상기 거래 처리 장치의 위치를 인식하는 수단, 상기 거래처리 장치의 인식위치를 상기 프로세서로부터 얻은 상기 이동경로에 따라서 이동시키도록 상기 이동수단을 제어하는 수단을 가지며,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이동해야할 이동경로가 결정된 상기 거래처리 장치를 포함하는 거래처리 시스템.

청구항 2

특허청구의 범위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경로를 구하는 수단은 상기 프로세서로부터 상기 이동경로를 수신하는 무선통신 장치(3)인 거래처리 시스템.

청구항 3

특허청구의 범위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이동 해야할 상기 거래처리 장치의 상기 이동경로를

하루의 적어도 하나의 특징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래처리 시스템.

**청구항 4**

특허청구의 범위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특징은 요일 및 날짜중의 적어도 하나에 의존하고 있는 거래 처리시스템.

**청구항 5**

특허청구의 범위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특징은 예상 고객수와 각 거래 항목별 예상 이용빈도중의 적어도 하나인 거래 처리 시스템.

**청구항 6**

하루의 특징에 관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수단, 상기 입력된 데이터에 따라 거래처의 장치가 설치되는 장소의 배치를 결정하도록 상기 거래처리 장치의 이동 경로를 결정하는 수단, 상기 거래처리 장치를 상기 결정된 이동경로에 따라서 이동시키도록 상기 결정된 이동경로를 출력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거래처리 장치를 갖는 거래처리 시스템.

**청구항 7**

특허청구의 범위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특징은 요일 및 날짜중의 적어도 하나에 의존하고 있는 거래 처리시스템.

**청구항 8**

특허청구의 범위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특징은 예상 고객수와 각 거래 항목별 예상 이용빈도중의 적어도 하나인 거래 처리 시스템.

**청구항 9**

거래처리 장치가 설치되는 장소의 배치를 결정하기 위해 상기 거래처리 장치가 설치된 위치에서 새롭게 설치해야할 새로운 위치로 상기 거래처리 장치를 이동시키는 이동경로를 구하는 수단, 조립된 상기 거래처리장치를 이동시키는 이동수단, 상기 거래처리 장치의 위치를 인식하는 수단, 상기 거래처리 장치의 인식위치를 상기 이동경로를 구하는 수단에 의해 얻은 상기 이동경로에 따라서 이동시키도록 상기 이동수단을 제어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거래처리 장치.

**청구항 10**

거래 처리 장치가 설치되는 장소의 배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상기 거래처리 장치가 설치된 위치에서 새롭게 설치해야할 새로운 위치로 상기 거래 처리 장치를 이동시키는 이동경로를 수신하는 수신 장치, 조립된 상기 거래처리 장치를 이동시키는 구동장치, 상기 거래처리 장치의 위치를 검출하는 검출장치, 상기 거래처리 장치의 검출 위치를 상기 수신장치에 의해 수신된 상기 이동경로를 따라서 이동시키도록 상기 구동장치를 제어하는 제어장치를 포함하는 거래처리 장치.

**청구항 11**

거래처리 장치가 설치되는 장소의 배치를 결정하도록 이동해야할 상기 거래처리 장치의 이동경로를 결정하는 프로세서와 조립된 상기 거래처리장치를 구동시키는 구동장치, 상기 프로세서에서 상기 이동경로를 수신하는 수신장치, 상기 거래처리 장치의 위치를 검출하는 검출장치, 상기 거래처리 장치의 검출위치를 상기 수신장치에서 수신된 상기 이동경로를 따라서 이동시키도록 상기 구동장치를 제어하는 제어장치를 가지며,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이동해야할 이동경로가 결정된 상기 거래처리 장치를 포함하는 거래처리 시스템.

**청구항 12**

특허청구의 범위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장치는 무선통신 장치(3)인 거래처리 시스템.

**청구항 13**

특허청구의 범위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이동해야할 상기 거래처리 장치의 상기 이동경로를 하루의 적어도 하나의 특징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래처리 시스템.

**청구항 14**

특허청구의 범위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특징은 요일 날짜중의 적어도 하나에 의존하고 있는 거래처리 시스템.

**청구항 15**

특허청구의 범위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특징은 예상 고객수와 각 거래 항목별 예상 이용빈도중의 적어도 하나인 거래 처리 시스템.

**청구항 16**

하루의 특징에 관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입력 장치, 상기 입력된 데이터에 응답해서 거래처리 장치가 설치되는 장소의 배치를 결정하도록 상기 거래처리 장치의 이동 경로를 결정하는 프로세서, 상기 거래처리 장치를 상기 결정된 이동경로에 따라서 이동시키도록 상기 결정된 이동경로를 출력하는 출력장치를 포함

하는 적어도 하나의 거래처리 장치를 갖는 거래처리 시스템.

**청구항 17**

특허청구의 범위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특징은 요일 날짜중의 적어도 하나에 의존하고 있는 거래처리 시스템.

**청구항 18**

특허청구의 범위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특징은 예상 고객수와 각 거래 항목별 예상 이용빈도중의 적어도 하나인 거래 처리 시스템.

**청구항 19**

거래처리 장치가 설치되는 장소의 배치를 결정하도록 이동해야할 상기 거래처리 장치의 이동경로를 결정하는 프로세서와 조립된 상기 거래처리 장치를 이동시키는 이동수단, 상기 프로세서에서 상기 이동경로를 구하는 수단, 상기 거래처리 장치의 위치를 인식하는 수단, 상기 거래처리 장치의 인식위치를 상기 프로세서로부터 얻은 상기 이동경로에 따라서 이동시키는 상기 이동수단을 제어하는 수단을 가지며,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이동해야할 이동경로가 결정된 상기 거래처리 장치를 포함하는 영업점에서의 거래처리 시스템의 배치 변경 시스템.

**청구항 20**

적어도 하나의 거래처리 장치를 갖는 거래처리 시스템의 배치 변경 시스템에 있어서, 하루의 특징에 관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입력장치, 상기 입력된 데이터에 응답해서 영업점의 배치를 결정하도록 상기 거래처리 장치의 이동경로를 결정하는 프로세서, 상기 거래처리 장치를 상기 결정된 이동경로에 따라서 이동시키도록 상기 결정된 이동경로를 출력하는 출력장치를 포함하는 거래처리 시스템의 배치 변경 시스템.

**청구항 21**

특허청구의 범위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 장치는 표시 장치인 배치변경 시스템.

**청구항 22**

영업점내에 프로세서와 적어도 하나의 거래처리 장치를 갖는 거래처리 시스템의 배치 변경 방법에 있어서, 거래처리 장치가 설치되는 상기 영업점의 배치를 결정하도록 이동해야할 상기 거래처리 장치의 이동경로를 결정하는 스텝, 상기 거래처리 장치의 위치를 인식하는 스텝 및 상기 거래처리 장치의 인식위치를 상기 이동경로를 결정하는 스텝에서 결정된 상기 이동 경로에 따라서 이동시키도록 상기 거래처리 장치의 이동을 제어하는 스텝을 포함하는 거래처리 시스템의 배치 변경 방법.

**청구항 23**

적어도 하나의 거래처리 장치를 갖는 거래처리 시스템의 배치 변경 방법에 있어서, 하루의 특징에 관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스텝, 상기 입력된 데이터에 응답해서 영업점의 배치를 결정하도록 상기 거래처리 장치의 이동경로를 결정하는 스텝, 상기 거래처리 장치를 상기 결정된 이동경로에 따라서 이동시키도록 상기 결정된 이동 경로를 출력하는 스텝을 포함하는 거래처리 시스템의 배치 변경 방법.

**청구항 24**

거래처리 장치가 설치되는 장소의 배치를 결정하도록 이동해야할 상기 거래처리 장치의 이동경로를 결정하는 스텝, 상기 거래처리 장치의 위치를 인식하는 스텝 및 상기 거래처리 장치의 인식위치를 상기 이동경로를 결정하는 스텝에서 얻은 상기 이동경로에 따라서 이동시키도록 상기 거래처리 장치의 이동을 제어하는 스텝을 포함하는 거래처리 방법.

**청구항 25**

특허청구의 범위 제 24항에 있어서, 이동해야할 상기 거래처리 장치의 상기 이동경로는 하루의 적어도 하나의 특징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래처리 방법.

**청구항 26**

특허청구의 범위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특징은 요일 및 날짜중의 적어도 하나에 의존하고 있는 거래처리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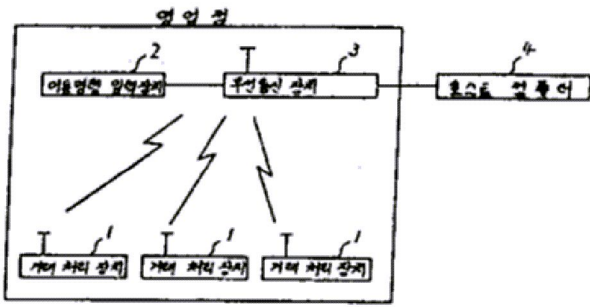
**청구항 27**

특허청구의 범위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특징은 예상 고객수와 각 거래 항목별 예상 이용빈도중의 적어도 하나인 거래 처리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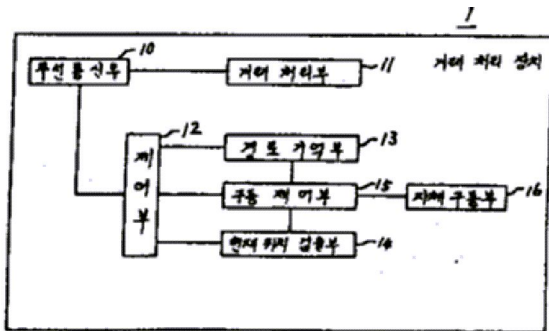
※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